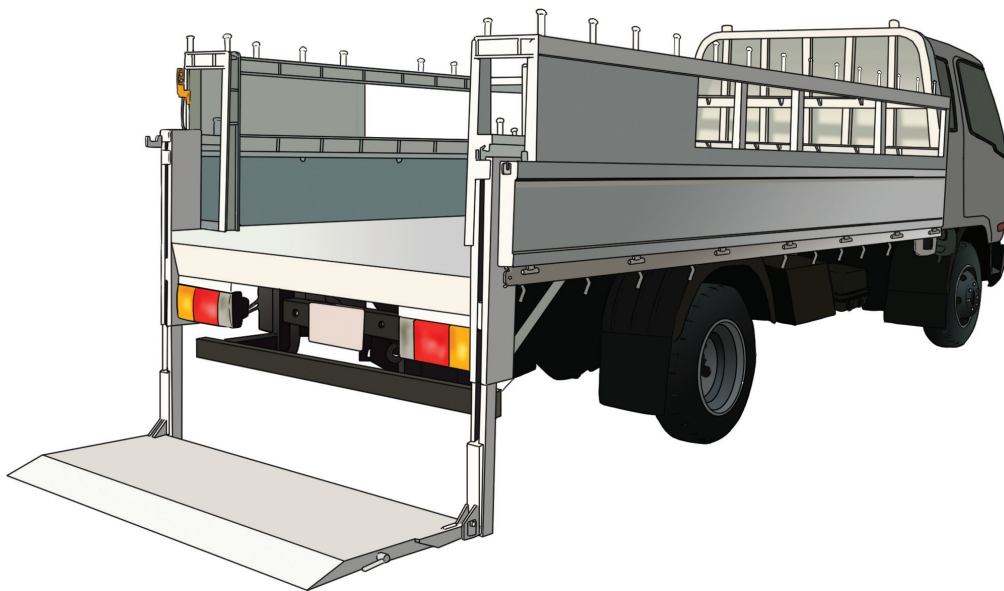




리프트 게이트 안전작업

리프트 게이트란?

화물용 트럭의 적재함 후면에 유압실린더와 이에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의해 수평, 수직으로 작동하는 리프트를 장착하여 중량 화물을 취급하는 장비를 리프트 게이트(Lift Gate)라 한다. 주로 고압가스 운반 차량, 드럼통 취급차량, 자동판매기, 피아노 등의 큰 부피와 중량물을 리프트에 적재하고 흔들림 없는 리프트를 통하여 중량물을 상·하차 하여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이다.



리프트 게이트 그림



리프트 게이트



주요 위험요인

-  **리프트 게이트 불시기동에 의한 끼임(협착)**
 차량후면의 리프트 게이트가 불시 기동하여 차량후면과 사이에 협착
-  **고정되지 않은 화물의 낙하**
 구름방지조치가 되지 않은 화물 또는 대차 등이 리프트 게이트 작동 중 낙하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
-  **리프트 게이트에서의 화물 적재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화물을 내리기 위해 리프트 게이트에 적재하던 중 개구부에 미끄러짐, 넘어짐에 의한 위험

안전대책

- **작업시작전 점검실시**
 - 유압실린더, 와이어로프의 손상 이상 유무 확인
 - 차량 적재함, 리프트 게이트 구동부의 등 이상 유무 확인
 - 리프트 게이트의 운반구의 미끄러짐, 변형 등의 유무 확인
- **작업방법의 준수**
 - 적재 제한(설계) 하중 내에서 중량물 취급
 - 근로자의 리프트 게이트 운반구 탑승 제한
 - 운반구의 크기에 적합한 화물을 운반할 것
 - 강풍, 강우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운반작업 금지
- **작업방법의 준수**
 - 적재하중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화물의 구름방지조치 실시
 - 화물의 운반구 적재 시 근로자 탑승 운전 금지
 - 건물의 통로에 화물차량을 연결할 경우 250mm 이상의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재해사례 : 리프트 게이트 철판에서 미끄러짐

개요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물건을 적재하다가 리프트 철판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발을 잘못 딛고 미끄러져 넘어짐



발생원인

- 리프트 게이트에서 미끄러짐

예방대책

- 리프트 철판 바닥에 미끄러짐 방지장치를 실시



안전수칙

- 리프트 게이트의 각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무부하 상태로 시운전을 한다.
- 작업 전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차량을 고정한다.
- 적재하중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운반구의 크기에 적합한 화물을 운반한다.
- 구르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화물은 견고히 고정한다.
- 운반구 승·하강 시 절대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한다.
- 운반구 승·하강 시 안전거리 밖에 근로자가 있도록 한다.
- 운반구에 화물을 편중되거나, 높게 적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 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 제175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 제184조 (제동장치 등)
 - 제172조 (접촉의 방지)
 - 제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이송)
 - 제17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제178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제185조 (연결장치)

